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19년 9월 19일
- 나. 발 의 자: 김화영 의원 외 7명
- 다. 회부일자: 2019년 9월 24일
- 라. 상정일자: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19. 9.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화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전문 개정(안 제1조)
-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변경하여 지급대상 확대(안 제3조)
- ‘대학생 장학금’ 지급범위를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로 구체화(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인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변경하여 지급토록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 127조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의 무상의무교육 확대실시(2019년 하반기 고3, 2020년 고2, 2021년 고1 예정)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로 확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재정비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화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
----------	-----

발의년월일 : 2019년 9월 일

발의자 : 김화영 의원 외 7명

1. 제안이유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전문 개정(안 제1조)

나.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변경하여 지급대상 확대(안 제3조)

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범위를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로 구체화(안 제7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9. 9. 10. ~ 9. 16.)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장학금”을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선정)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선정) 장학생은 구지회장이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제6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의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u></p> <p><u>제5조 (선정) ①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 4. (생 략)</p> <p><u>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예산 범위내에서 정한다.</u></p> <p><u>제7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u></p>	<p><u>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u> ----- -----.</p> <p><u>제5조 (선정) 장학생은 구지회장이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 4. (현행과 같음)</p> <p><u>제6조 (장학생의 정원) -----</u> -----<u>범위</u>-----.</p> <p><u>제7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u></p>

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급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의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